<별지 제5호 서식> (제9조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의번호	2020-02	심의방법	서면	발주부서	공공자전거운영처
안 건 명	2020년 서울형 공공자전거 QR 단말기 제작구매				
발 주 부서안 (원 안)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여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무선 통신모듈이 장착된 교통수단용 단말기 최근 10년간 누적건으로 3,565대 이상 제작·납품한 실적 (교통수단용 단말기는 자전거, 버스, 택시, 지하철 분야로 한정) - 기존 따릉이 QR 단말기 및 비콘 공급자와 기술지원확약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의결내용	○ 수정의결 1.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의 적정성 검토 - 본 건의 과업은 '제작구매'라고 되어있어 제조 또는 납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제한경쟁입찰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 계약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에 따른 실적제한으로 보이므로, 실적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제조'입찰이어야 함. **- 위 근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판단과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매'와 '제작'을 혼용하지 않고 물품'제조'의 경우로 한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함. 2. 제한경쟁입찰 실적제한 시 규모 통일에 대한 필요성 검토 - 3번째 심의안인 '서울형 공공자전거 거치대 구매설치 및 안내간판 설치'의 실적제한시 일단위 절사하여 규모산정이 이뤄졌으므로 2번째 심의안의 실적제한도 이				

	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모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약심의요청서상 실적규모(3,565대 이상)가 구매설명서 등에 기재된 실적규모(3,000대 이상)과 상이**하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이내 범위 안에서 **규모를 명확히 산정한 후 문구의 통일**이 필요함. **3. 기술지원 협약서 관련 검토** 가. 기술지원 범위 : 기술지원협약서 제2조 제2항은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특수한 기술'에 대한 부분과 기술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 나. 협약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8.시행)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120~121쪽)에 따르면, "마)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다)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 (중략)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를 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공된 기술지원협약서 제3조에는 "협약금액은 발주기관과 제조사가 협의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명기바람. 동 제한입찰 운영요령 122쪽 나)에 따르더라도,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은 동일함 ※ 본 건의 과업을 '특수한 설비·기술이 '일부'요구되는 물품제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19~120쪽)로 볼 것인지, '특수한 성능·품질이 '일부' 요구'되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 제한입찰 운영요령 121~122쪽) 물품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협약서에 대한 근거규정과 서식(동 제한입찰 운영요령 116~122쪽, <별첨양식 1>, <별첨양식 2>)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발주부서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함.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20년 04월 24일

서울시설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 윤 성 철

위 원 : 구 자 필　　위 원 : 박 동 욱

위 원 : 김 호 정　　위 원 : 차 경 희